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17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중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8명(5급 5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5명, 7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3명(5급 1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7급 2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2의2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54”로 하고, 행정사무관 “118”을 “117”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6”을 “55”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9”를 “16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를 “92”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7”을 “6”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8”을 “2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하고 행정사무관 “6”을 “5”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2”를 “14”로 하고, 행정서기 “21”을 “20”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5”를 “4”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27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42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9월 17일”을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33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원 5명(행정주사 3명, 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은”을 “정원 3명(행정주사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8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8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공업서

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24년 9월 17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u>2027년 3월 31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u>정원 5명(행정주사 3명, 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u> 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 ----- <u>정원 3명(행정주사 3명)</u> 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u>정원 2명(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u> 은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49</u>	<u>54</u>	+5
·	·	·	
·	·	·	
행정사무관	<u>118</u>	<u>117</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6</u>	<u>55</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9</u>	<u>166</u>	-3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9</u>	<u>92</u>	+3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7</u>	<u>6</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8</u>	<u>26</u>	-2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u>	<u>7</u>	+1
·	·	·	
·	·	·	
행정사무관	<u>6</u>	<u>5</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2</u>	<u>14</u>	+2
·	·	·	
·	·	·	
행정서기	<u>21</u>	<u>20</u>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5</u>	<u>4</u>	-1
·	·	·	
·	·	·	